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충분한 저위발열량 확보가 어려워 실제 생산이 저조했던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활성화를 위해 고체연료 성분기준 등의 규제 합리화와 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관련 규정 정비

3.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 관련 사항 정비(제7조제1항, 제2항)

- 1) 고체연료를 만드는 시설 설치 시 ‘설치 및 운영계획’을 제출토록하여 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 생산이 가능한지 등을 증명할 수 있도록함
- 2) 고체연료가 사용처 등을 확보하여 수요과 공급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함

나.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관련 사항 정비(제18조제1항, 별표5)

- 1) 고체연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가축분뇨 처리시설로 고체연료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고체연료 성분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설치 및 운영계획 등

제7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드는 시설이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고체연료 성분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고체연료가 사용처 등을 확보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여부

제1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11조의2 고체연료 성분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별표 5 비고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운영계획의 중요한 부분 변경사항

은 아래와 같다.

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시설을 변경

나. 가축분뇨 고체연료 중 혼합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에서 보조원료
및 원료비를 변경

다. 저위발열량 2,000kcal/kg 이상의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	
연 락 처	(044) 201 - 7076